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64,311,576	19,929,347
일반회계	621,299,906	18,638,997
특별회계	43,011,670	1,290,350
기타특별회계	43,011,670	1,290,350
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	7,031,495	210,945
섬진강댐특별회계	8,824,552	264,73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89,161	17,675
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	2,121,333	63,64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2,913,733	687,412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531,396	45,942

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 과 같다

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 으로 한다

제 4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23,800,000천원」 으로 한다

제 5 조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3,510,704천원」 과 같다

제 6 조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「명시이월 사업조서」 와 같다.

제 7 조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「계속비 사업조서」 와 같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한다.